

October 15, 2026

## [예규] 국외에서만 수행한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 아니나, 전문용역은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간주 가능 (서면-2026-국제세원-2130)

### I. 서면-2026-국제세원-2130 [국제세원담당관-627], 2026. 7. 7.

#### 1. 사실관계 및 질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 등에게 음원 제작 컨설팅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외주비를 지급하였다.

해당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에게 국내사업장은 없었으며, 이들은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전적으로 해외에서 업무를 수행한 후 결과물만 내국법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한 인적용역의 대가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다.

#### 2. 과세당국의 유권해석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전적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학기술 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국외에서 제공하더라도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때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 3. 시사점

법인세법 제 93 조 제 6 호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을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일정한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은 이번 예규에서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확인하였다.

다만,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이용한 용역은 주의가 필요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 132 조 제 6 항은 인적용역 가운데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해당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용역의 경우에는 국외에서 제공되었더라도 조세조약에 따라 그 소득이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포함된다.

이번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은 해외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검토에서 ‘용역 수행장소’만 확인하는 단순한 접근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해외 컨설팅, 기술지원, 경영자문, 연구개발 등 전문성이 높은 용역에 대해서는 계약상 업무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고 전문용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문용역에 해당한다면 상대방의 거주지국과 체결된 개별 조세조약의 소득구분 및 원천지 규정까지 확인한 후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관련 구성원

---

### 장성두

변호사

T 02.3404.6585

E [sungdoo.jang@bkl.co.kr](mailto:sungdoo.jang@bkl.co.kr)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뉴스레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